2025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의 안 번 호	38

제출년월일 : 2026. 9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25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,114,511천원으로서, 이중 2건에 663,536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계(2건)	663,536천원
○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	614,536천원
○ 대관령면 청사 화재현장 복구	49,000천원 임.

3. 관계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
○「지방재정법」제43조 및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48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**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예비비)**

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**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**

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**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(예비비 사용의 제한)**

○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